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 관할 인접청 대상 확대(안 제90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'25.12.30. 고용노동부 직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,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관할 구역 외에도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 지역에도 기술지도가 가능하도록 개정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 지역에도 기술지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에 추가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함

* 현재는 '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'만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에 추가 지정신청이 가능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원활한 산재예방 지도 가능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2. 특별교육 대상 작업 추가 및 교육내용 강화(안 별표 5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고위험 작업인 벌목작업을 추가하고, 밀폐공간 작업 시 교육 내용을 추가하는 등 유해·위험한 작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특별교육 강화 필요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“벌목작업”을 추가하고,
 - 임업기계의 특성 및 위험성, 벌목작업 순서와 안전작업 방법,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, 보호구 및 신호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내용으로 규정
-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내용에 밀폐공간의 위험성, 관할 소방관서 등 비상연락처, 대피용 기구의 위치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등 추가
- “화재감시 작업”이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
 - *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‘화재위험작업’ → ‘화재위험작업 및 화재감시 작업’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특별교육 강화에 따른 산재사고 감소 효과 기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3. 조문 정비(안 제95조, 155조, 별표5, 별표9, 별지64, 별지68, 별지74호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인용 조문 개정 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·운영 상 미비점 개선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시행규칙 제95조제5항 인용 조문 수정(제27조제4항 → 제27조제5항)
- 시행규칙 제155조제1항제4호 오타 수정(“유협성” → “위협성”)
- 시행규칙 [별표 5]의 “25.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”을 “25.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”으로 변경
- 시행규칙 [별표9]의 안전·보건표지의 기본모형 중 금지 표시의 그림 지시선 수정
- 시행규칙 [별지 64·68호 서식(물질안전보건자료)] 내 인용 조항 수정(법 제112조 “제6항” → 법 제112조의2)
- 시행규칙 [별지 제74호 서식(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)] 상 인용 조항 수정(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 → 제89조제2항)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인용 조문 및 오타 정비 등을 통해 현장 혼선 감소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